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13509]에 대한 BSA 의견서 | THE SOFTWARE ALLIANCE

2022년 4월 18일

BSA | 소프트웨어연합 (BSA)은 먼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13509)에 대한 본 의견서를 전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윤영찬 의원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SA는 국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BSA의 회원들은¹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첨단 기술이 가지는 막대한 잠재력과, 첨단 기술의 올바른 사용 및 지속적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점을 홍보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 성장 및 각종 정부 서비스들의 질적 성장 및 대응력 증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명확한 역할 구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배치 및 이용(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관여할 수 있는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에 부합하도록 적합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인공지능 심의회 권고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 구분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² 권고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역할 및 맥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자와 배포자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한 인공지능 개발,

¹ BSA's members include: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Aveva, Bentley Systems, Box, Cisco, CNC/Mastercam, Dassault, DocuSign, Dropbox, IBM, Informatica, Inte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TC, Rockwell,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²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019,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Per the Recommendation, the AI stakeholder community "encompasses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or affected by, AI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구축 및 사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두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의무 및 법적 책임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야기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와 가장 밀접한 기업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일부 조항(제5조 및 제19조)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입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책임 구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에서 명시한 이용자의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에 의한 자료 제공 등). 또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일부, 혹은 일반 범용 인공지능 솔루션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시로, 기업이 사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기업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 동시에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됩니다.

상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BSA 는 의원실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 법안에서 의무를 규정할 때, 선제적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의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2) 해당 의무를 어느 이해관계자에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정의 중 사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여 이해관계자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 동시에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 또한 부과됨을 명시할 것을 제언 드립니다.

OECD 와 동일한 인공지능의 정의 사용

원문	제안
<p>제 2 조 (정의)</p> <p>(2) “인공지능”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p>	<p>제 2 조 (정의)</p> <p>3. “인공지능”이란 인간에 의해 주어진 목표 집합에 대해 실제 및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p>
<p>설명:</p> <p>인공지능 시스템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치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자동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과 표준은 서로 다른 관할권 간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추가적인 채택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p> <p>이와 관련하여, BSA는 OECD가 제정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사용할 것을 제언 드립니다. OECD는 권고안에서 인공지능을 “인간에 의해 주어진 목표 집합에 대해 실제 및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OECD가 내린 본 정의는</p>	

유럽연합을³ 포함한 다양한 규제당국에 의해 참조되었습니다. OECD의 정의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정의를 사용한다면 국제적 조정, 대화, 채택 및 준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험인공지능의 정의 명확화

원문	제안
<p>제 2 조 (정의)</p> <p>(3) “고위험인공지능”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p>	<p>제 2 조 (정의)</p> <p>(3) “고위험인공지능”이란 (i)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써 (ii)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p>
<p>설명:</p> <p>명확한 정책 의도 수립을 위해 BSA는 고위험인공지능의 정의를 개인의 생명, 건강, 안전, 혹은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인공지능으로 내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고위험인공지능을 결정하는 조건은 누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a) 개인의 안전 및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또한 b) ‘고위험’으로 간주되기 위한 특정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분야 등의 고위험 산업에 사용되는 급여 정산 인공지능과 같이 위험성이 낮은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p> <p>이와 별개로, 제2조 제3항의 고위험인공지능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예시 역시 우려됩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공지능”은 인적자원 관리에 사용되는 인공지능부터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BSA는 이와 같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유발시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p>	

“이용자”의 정의 명확화

원문	제안
<p>제 2 조 (정의)</p> <p>(3) “이용자”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p>	<p>제 2 조 (정의)</p> <p>(3) “이용자”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기술 또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본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를 말한다.</p>

³ The European Union’s draf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define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s “software that ... can, for a given set of human-defined objectives, generate outputs such as content,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the environments they interact with”.

설명:

“이용자”의 기존 정의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BSA가 제안한 수정된 정의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생태계의 모든 기업, 특히 인공지능이용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법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용자 보상 체계 확립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방안 규정

원문	제안
<p>제 5 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p> <p>(3)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개발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p>	<p>제 5 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p> <p>(3) 고위험 인공지능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사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정으로 인해 위해 및 악영향이 초래될 경우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p> <p>(4) 제 3 항에 따른 이용자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설명: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배치 및 사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의 절차적인 측면에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인간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는 능력이 수반됩니다. BSA는 상술한 내용이 제 5 조 제 3 항의 정책적 의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가능한 구제 방안의 확립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BSA는 **이용자의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부과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객체로써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도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공할 의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 체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용자 보상 의무 제거

원문	제안
<p>제 6 조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p>	<p>제 6 조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p>

<p>(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2)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설명:</p> <p>BSA 는 제 6 조 2 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인공지능 이용자를 위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2 항의 경우, 이용자가 보상을 받는 상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제도의 필요성 역시 의심됩니다. 현행 불법행위법 원칙은 기술 중립적이면서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규제를 도입한다면 기존 법률과의 불일치 및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의 연간 조사 및 내부 이행 보고서 작성 조항 제거

원문	제안
<p>제 6 조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기관 내부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5) 제 4 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는 알고리즘 구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제 6 조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의무)</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윤리적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기관 내부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5) 제 4 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는 알고리즘 구성 및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하고 이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설명:</p> <p>BSA 는 제 6 조 5 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 4 항에서 이미 윤리적인 인공지능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적 인공지능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생명주기의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검토합니다. 연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례 이행보고서의 목적, 공개 대상, 발표의 취지 역시 불분명합니다.</p>	

국제 표준에 맞춘 “기술 표준” 확립

법안의 제 8 조 및 제 9 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안정성, 신뢰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표준”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개발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규제 및 표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타 관할권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BSA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단적인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맞추어 인공지능의 기술 표준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은 신뢰성 및 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가 별로 상이한 표준에서 발생하는 위험성 역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 발전 또한 저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이 떨어지는 국가 표준은 의도되지 않은 국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기업들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둘째, 국가 표준은 국내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SA**는 제 9 조 3 항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참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⁴ ISO의 인공지능 표준 위원회⁵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 해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식 등 10 가지 표준을 제정했으며,⁶ 현재 27 개의 추가적인 표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는 대한민국 정부 고유의 표준 개발을 지양하고 ISO의 표준을 활용하고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예외 적용

원문	제안
<p>제 14 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p> <p>(1)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개발 ·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 또는 학습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p>	<p>제 14 조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 전송)</p> <p>(1)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개발 ·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 또는 학습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전산 분석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p>
<p>설명:</p> <p>BSA는 본 예외 적용 조항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BSA는 저작권법이 기술 변혁을 고려하고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머신러닝 과정의 부산물로 생성된 복제물(예: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을 위한 데이터 말뭉치 생성)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면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혁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p>	

⁴ Article 9(3) read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ust maintain and strengthen the standardization of algorithms and AI technology or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⁵ See ISO/IEC JTC 1/SC 42 at <https://www.iso.org/committee/6794475.htm>.

⁶ See ISO/IEC TR 24027: 2021 (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at <https://www.iso.org/standard/77607.html?browse=tc> and ISO/IEC TR 24028:2020 (Overview of trustworthi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t <https://www.iso.org/standard/77608.html?browse=tc>.

아울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유럽 연합), 데이터 분석(일본) 또는 컴퓨터 데이터 분석(싱가포르)에 대한 명시적인 저작권 예외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유럽 연합 – “데이터 마이닝”**: 2019년 4월, 유럽 연합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디지털 단일 시장의⁷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지침 제3조와 제4조는 “패턴, 트렌드 및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텍스트와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분석하는 모든 자동화 분석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복제물 생성을 인공지능 연구자에게 허용하는 두 가지의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 지침은 제3조와 제4조가 기존에 존재하는 머신 러닝에 필요한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와 제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일본 – “데이터 분석”**: 2018년 5월,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용자가 “데이터 분석(구성 언어, 소리, 이미지 데이터의 추출, 비교, 분류 또는 기타 통계적 분석)”과 “컴퓨터 데이터 처리”를 포함한 모든 저작물을 비소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⁸
- **싱가포르 – “컴퓨터 데이터 분석”**: 2019년 9월, 싱가포르는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예외는 컴퓨터 데이터 분석과 일반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허용되는 복제물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컴퓨터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ii) 컴퓨터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관련된 공동 연구 혹은 조사.⁹

사용된 용어와 관계없이, **BSA**는 한국 저작권법이 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저작권법 예외 적용을 위해 제 14 조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 부연

제 17 조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부가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SA**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부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제17조 1항 1호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위험관리시스템”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이 “위험관리시스템”의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SA**는 의원실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수월한 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성 관리 체계”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제17조 1항 4호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제3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 등)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SA**는 해당 의무를 제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⁷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pril 2019, <https://eur-lex.europa.eu/eli/dir/2019/790/oj>.

⁸ Copyright Law of Japan, Article 30-4, <https://www.cric.or.jp/english/cji/ocl.html>.

⁹ Copyright Act 2021 of Singapore, Sections 243-244, <https://sso.agc.gov.sg/Acts-Supp/22-2021/Published/>

- 제17조 1항 5호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사람에 의한 고위험인공지능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SA는 1) 감독의 적절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2) 감독에 대한 의무가 제17조 1항 1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제17조 1항 6호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강화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시행 중인 사이버 보안 지침은 불충분하다고 가정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SA는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사이버 보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제17조 2항 및 제17조 3항은 고위험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용 원리를 이용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작업이 처리되고 있음을 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절한 인공지능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역량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배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자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역시 인공지능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기에(제18조 4항 참조), 위 조항은 비슷한 내용을 중복하여 고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BSA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고지하게 하는 의무를 제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용자 대응 의무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한정 및 예외 부여

원문	제안
<p>제 19 조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보호)</p> <p>(1)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2.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p>(2)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는 알고리즘에 따른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 19 조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보호)</p> <p>(1)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험인공지능이 산출한 결정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요구할 권리 2. 고위험인공지능이 산출한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재고를 요청할 권리 3. 알고리즘에 따른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할 권리 <p>(2) 제 1 항에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의 설명 및 데이터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면제된다.</p>

	<p>1.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공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치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p> <p>3.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공이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민감한 정보나 독점적 정보의 노출을 야기하는 경우</p> <p>(3)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4항에 따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윤리위원회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료 제공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4)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p>
--	---

설명:

제19조는 이용자가 고위험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책임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모두가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사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한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BSA는 이용자의 권리 행사로 인한 요구에 대한 응답의 책임은 인공지능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부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불충분합니다. **BSA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BSA는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의 누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하여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이용자 요구 대응 의무를 면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는 포괄적인 정책적 이해의 맥락에서 설명가능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설명가능성”의 원칙은 인공지능 시스템 및 솔루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의무화되거나 요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전문가 단체(HLEG)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으며, 추적성, 평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등 기타 설명적 조치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¹⁰ 또한 설명가능성이 필요한 정도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로 인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맥락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¹¹

따라서 BSA는 HLEG가 제안한 “기타 해명 조치”와 같이 설명가능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결론

BSA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¹² 이를 위해 BSA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5대 핵심 조건을 파악했습니다. 5대 핵심 조건은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및 사용과 관련된 이점을 홍보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산업계와 정부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반영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 공정성, 정확성, 데이터 출처, 설명가능성 및 책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 강조
2. **건전한 데이터 혁신 정책:**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촉진하는 법적 체계와 부가가치 서비스(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확실성 및 민감하지 않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인공지능 및 기타 데이터 기반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이터 정책 추진
3. **사이버 보안 및 사생활 보호:** 고도화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정책 주창
4. **연구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 조성, 정부와 업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력 공급 경로 촉진을 위한 투자 지원
5. **인력 개발:** 미래 일자리의 인력 개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 기회 창출

BSA는 인공지능의 중요성, 그리고 특정 기술의 사용에서 야기되는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편향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BSA는 “**Confronting Bias: BSA’s Framework to Build Trust in AI**”¹³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BSA는 조직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¹⁰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pril 2019, https://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doc_id=60419 at p. 13.

¹¹ 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I (ALTAI), July 2020, https://ec.europa.eu/newsroom/dae/document.cfm?doc_id=68342 at p.15.

¹² BSA AI Policy Overview, accessible at <https://ai.bsa.org/>

¹³ Confronting Bias: BSA’s Framework to Build Trust in AI, accessible at <https://ai.bsa.org/>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영향 평가 수행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BSA는 본 의견서가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합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세부적인 논의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geunk@bsa.org).

김근

BSA 코리아 대표

BSA | THE SOFTWARE ALLIANCE

